

제 863 호
1983. 4.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김 성 배
공 보 관 전 경 호
전 화 : 725-788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765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	3
제 1766 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4
○ 규 칙	
제 2022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	20
○ 고 시	
제 24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 승인	21
제 249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 고시	21

< 이 면 계 속 >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058

제 250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22
제 251 호 : 한강구역 하천골재채취허가내용고시	22
제 25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23
제 253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24
제 254 호 : 폐지고기연동가격결정고시	25

◎ 공 고

제 236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25
제 238 호 : 관인폐기공고	25
제 239 호 : 관인폐기공고	26
제 242 호 : 환지처분공고	26
제 243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27
제 245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28
제 246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영동 2 차)	28
제 247 호 :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 집행계획	29

◎ 성책구침공고

제 226 호 : 축적변경 사업확정공고	29
-----------------------------	----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설치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㉒

◎서울특별시조례제 1765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
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 1 조 (설치목적) 강서구 목동지구 택
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정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하부조직) ①소장 밑에 관리과와
공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공사과장은 지방토목 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사무 및 청사관리
2.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3. 자재의 수급관리
4. 토지매입 및 보상

5. 지장물조사 및 철거

6. 기타 사업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의 계획수립
2. 택지조성과 주택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제 5 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행정직 1
5	급	2	행정직 1, 토목 또는 건축직 1
6	급	7	행정직 3, 토목 또는 건축직 4
7	급	11	행정직 3, 토목 또는 건축직 8
8	급	8	행정직 3, 토목 또는 건축직 4, 지적직 1
9	급	4	행정직 2, 토목 또는 건축직 2
고 용 직		8	행정정보조원 3, 타자원 2, 수위 2, 청부 1
계		4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66 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뚝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뚝치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격리병원
2. 공장
3. 창고시설
4. 운수시설
5. 사설강습소
6. 직업훈련소

7. 일반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판매시설 10. 위탁시설 11. 관탁집회시설 12. 동 물 원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14. 자동차 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15. 동물 관련시설 16. 쓰레기 오물처리장 17. 활 영 소 18. 묘지관련시설 19. 교정시설 20.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상, 공구상 제 4 조 (건폐율 및 대지안의 조경) ①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10 장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	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제곱미터(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이외 지역의 풍치지구내로서 주변 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 6 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기존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5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 8 조 (건축물의 규모등) 풍치지구안에서는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영 제 102 조 제 4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9 조 (학교 건축물등에 대한 적용
특례) 풍치지구안에 학교 설치기
준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 (전문대학
이상은 각속학교에 한함)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서 주위 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서울특별시 (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 층 (28 미터 이하로 한다) 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 미터 이상일 때에는 5 층 (20
미터 이하로 한다) 까지로 한다.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10 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 2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 3 종 미관지구 : 관공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 4 종 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5. 제 5 종 미관지구 : 제 1 종 내지 제

4 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제 11 조 (건축심의)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장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2 조 (용도제한) ① 제 1 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매시장
2. 철물 기타 제품류 취급 고물상, 철물점, 공구상, 전제상
3. 격리병원
4. 공장
5. 창고시설
6. 교정시설
7. 묘지관련시설
8. 저탄장, 야적장
9. 동물병원 (1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세탁소, 장의사, 점육점 다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단독주택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공

동주택, 기숙사

②제 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및 자동차 판매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 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제 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9호 및 제 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2. 위탁시설

3. 관람집회시설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4. 쓰레기 오물처리장

5. 동물판매시설

⑤제 5종 미관지구 안에서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 및 제 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 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600 제곱미터

2. 제 2종 미관지구 : 300 제곱미터

3. 제 3종 미관지구 : 300 제곱미터

4. 제 4종 미관지구 : 200 제곱미터

5. 제 5종 미관지구 : 200 제곱미터

제 14조 (건축물의 높이) ①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높이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5층이상

2. 제 2종 미관지구 : 3층이상

3. 제 3종 미관지구 : 1층이상

4. 제 4종 미관지구 : 2 - 4층범위내

5. 제 5종 미관지구 : 2층이상

②아파트,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립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세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영 제 102조 제 4항 및 제 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로서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1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 1종 내지 제 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성 고

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과의 높이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이 15

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제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도로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8	9
제 2 종 미관지구	12	6
제 3 종 미관지구	15	9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12	6

③제1종 내제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	150
4-5 층	200
6-10 층	300
11-15 층	500
16층이상	800

제17조(부속건물의 규모)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된 건축물의 이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건축물의 모양) ①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복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시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경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

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옥상층에는 제단실, 기계실, 불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

제19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강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등이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11층이상의 건축물
2. 10,000㎡이상의 건축물

제 20 조 (적용에서의 제외) 시장은 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 14 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4 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 41 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안의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4. 제 6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21 조 (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 공장
2.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3. 교정시설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일반 업무시설
6. 적리병원
7. 동물 관련시설
8. 쓰레기 오물처리장
9. 묘지관련시설
10. 위락시설
11. 숙박시설
12. 관람집회시설
13. 창고시설
14. 판매시설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22 조 (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적리병원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3. 동물관련시설
4. 쓰레기오물처리장

5. 묘지관련시설
6. 공 장
7. 교정시설
8.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9. 동물관련시설
10. 위탁시설
11. 숙박시설
12. 관람집회 시설
13. 창고시설
14. 판매시설
15. 교육연구시설
16. 종교시설
17.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제 6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23 조 (건폐율)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10 분의 2
2. 제 2 종 공지지구 : 10 분의 3
3. 제 3 종 공지지구 : 10 분의 4

제 24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600 m^2
2. 제 2 종 공지지구 : 400 m^2
3. 제 3 종 공지지구 : 300 m^2

제 25 조 (용적율)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60 %
2. 제 2 종 공지지구 : 90 %
3. 제 3 종 공지지구 : 120 %

제 26 조 (대지안의 공지)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표에 제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 m^2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m)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의 거리	측면대지경계선으 로부터의 거리	후면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
제 1 종 공지지구	6	2	4
제 2 종 공지지구	4	1.5	3
제 3 종 공지지구	3	1	2

제 7 장 공합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27 조 (용도제한) 공합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발전소, 제련소, 요업공장, 화학공장
3. 묘지관련시설

제 8 장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28 조 (용도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근린공공시설
7.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제 9 장 제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제 29 조 (건축제한) 제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수위가 10.5미터일때 내수 및의수로 인한 침수면보다 1미터 이상 높고, 제해위험구역외로부터 당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장애가 없는 대지의 건축물
2. 자동차관련시설
3. 동물관련시설
4. 운동시설
5. 흥행전람회, 공사용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 건축물

제 30 조 (제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구조) 제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해위험구역의 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0 장 대지안의 조정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 높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제 32 조 (대지안의 조정) ①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영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 등 조정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구 분	식 제 밀 도 (제 곱 미 터 당)	상 목 비 율 (퍼 센 트)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3 본 이상 (다만, 수고 5 미터 이상 이고 수관폭 2.5 미터 이상 일 경우에는 0.1 본 이상)	상목수 50 낙엽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 본 이상	-	

②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 수종, 수량 및 방법등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3 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①영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1 급이상) 2 인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영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 34 조 (조경기준의 강화) 시장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치지구안의 학교 건축제한을 완화한 경우 및 양호한 임상을 훼손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훼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식재 기준보다 강화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 (조경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식수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 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
제 36 조 (기준미달대지안의 건축완화)
법 제 53 조의 7 제 2 항 및 영제 10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완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폐율

가.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 당해 전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

나.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전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

2. 용적율

가.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 당해 용적율의 2배 이하

나.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가목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text{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text{당해대지면적}}$$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

4.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 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2분의 1 이상

제 37 조 (미판지구안의 적용특별)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15 조 및 제 16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 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의 후퇴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8 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설비 등은 제 36 조 및 제 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증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 12 장 용 적 율

제 39 조 (용적율) ①법 제 40 조 제 1 항 단서 및 영 제 86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별표와 같다
 ②특정가구 정비지구, 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의 용적율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는 1,000 퍼센트 이하, 주거지역안에서는 400 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50 퍼센트 이하로 할수 있다.
 ③강북 4대문내 지역에서의 학교 이적지내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주거지역 200 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600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40 조 (용적율의 완화) ①법 제 40 조 제 3 항 및 영 제 8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제 39 조 제 1 항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8 배이하, 당해대지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용적율의 2 배이하의 범위내에서 완화 기준과 용적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특정가구 정비지구
2. 아파트 지구
3. 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

②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3 장 건 축 위 원 회

제 41 조 (구성) ①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국장(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할수 없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2 조 (위원회의 운영) 1.위원회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보조는 건축지도과(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제 43 조 (자료 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 44 조 (회의록 및 수당)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45 조 (비밀준수) 위원회의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장 보 칙

제 46 조 (담장의 구조등)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담장의 높이와 모양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7 조 (도심 4대문내 층수제한) 별지 도면에서 표시된 도심 4대문내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층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상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내에서 그 층수를 2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증감할수 있다.

1. 20미터이하지구 : 5층이하

2. 40미터이하지구 : 10층이하

3. 60미터이하지구 : 15층이하

4. 80미터이하지구 : 20층이하

5. 100미터이하지구 : 25층이하

제 48 조 (온돌의 사공) ①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온돌 시공 신고서에 의거 온돌의 시공을 신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49 조 (도시설계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시장법 제 8조의 2 및 영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시설제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 내지 제 20 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 50 조 (적용의 특별) 이 조례의 제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제 5 조 단

서 규정 및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받고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로서 기준 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용 적 율

(단위 : 퍼센트)

용 도 지 역	구	분	용 적 율
주거전용지역	강북지역		70
	강남지역, 여의도지역 (이하 "강남지역"으로 한다.)		80
주 거 지 역	강북지역		250
	강남지역		300
준 주 거 지 역	강북지역		450
	강남지역		500
상 업 지 역	강 북 지 역	4 대문내지역	670
		4 대문외지역	900
	강 남지 역		1000
전용공업지역, 공업 지역, 준공업지역	강북지역		200
	강남지역		300
자연녹지지역			60
생산녹지지역			150

(별 리도면)



제 963 호

시

제 1983.4.30 37-18

(별지서식)

구멍탄용 온돌시공 신고서

기술 자격 :

상호및명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소소재지 :

온돌시공위치 :

온돌시공면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49 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 위치에 구멍탄
용 온돌을 시공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장 (구청장) 귀하

규 칙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022 호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사무분장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계, 경리계 및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일반서무 및 청사관리
- 나.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
- 다.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라.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 마.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가. 계약 및 입찰

- 나. 예산의 지출 및 결산
- 다. 물품의 수급 및 관리
- 라. 자재의 수급 및 관리

3. 관리계

가. 토지의 매입 및 보상

- 나.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

제 3 조 (공사과) ① 공사과에 계획계, 공사 1계, 공사 2계 및 공사 3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사 1계, 공사 2계, 공사 3계의 업무구분은 소장이 공구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지정한다.

1. 계획계

- 가. 택지조성사업의 계획수립
- 나.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수립
- 다.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1계, 공사 2계, 공사 3계

- 가. 택지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독
- 나. 주택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4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82.2.3),
 동고시제 79 호 (83.2.14), 동고시 제
 206 호 (83.4.12) 도시계획시설 (학

교)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6 조 권한위임에 의
 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4. 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학 교	사당동 산 2 번지 일대	35,213	
변경	"	"	35,690	477㎡ 추가
신설	"	상도동 175 번지 일대	10,830	
"	"	상도동 산 65-41 일대	25,627	2 개 교
"	"	동작동 산 10-3 번지	14,959	

나. 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24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82.2.3)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관
 악구봉천동 산 151 번지 일대의 토지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4. 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신설	학 교	관악구 봉천동 산 151 일대	16,661㎡ (5.040 평)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 호 (82.1.14)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된 보성여자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사정비과 및 보성여자중, 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5. 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용산구용산 2가동 1-112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 2) 명칭 : 보성여자중, 고등학교

다. 사업시행규모

- 1) 시행면적 (대지면적) : 9,561.6㎡
- 2) 사업변경

가) 기 존

증축연면적 : 2,278.459㎡

용 도 : 교사 및 부대시설

나) 변경후

증축연면적 : 2,417.680㎡

용 도 : 교사 및 부대시설

다) 변경내용 (금회허가분)

증축연면적 : 139.221㎡

용 도 : 교사 및 부대시설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8

성명 : 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
한 경 직

마. 사업실행기간 :

[당초 : 82.1.14 ~ 83.3.31

[변경 : 82.1.14 ~ 83.5.31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 용산구 용산 2가동 1-1123

사. 토지소유자 : 용산구 용산동 2가 8 학교법인 보성학원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51 호

하천골재채취허가내용고시

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하천골재채취를 허가하고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5. 1

서울특별시장

1. 골재채취 허가내용					
공구별	구 분			허 가 지 역	허 가 량 (㎥)
	허가자	수허가자	하천법제4조및동법시행 령제2조에 의한 양수자		
1	서울 특별시시장	서울 특별시시장	동 아 전 설 (주) 대 표 입 원 수	강서구계좌동 198 ~ 마포구난지도 487	8,255,736
2	"	"	대 린 산 업 (주) 대 표 이 준 용	마포구난지도 487 ~ 마포구현석동 115	6,254,622
4	"	"	진 흥 기 업 (주) 대 표 박 영 준	용산구이촌동 207 ~ 용산구용산동 2가 69	2,873,612
6	"	"	남 광 토 건 (주) 대 표 김 웅 내	용산구한남동 465 ~ 성동구성수동 688	2,749,330
7	"	"	미 룡 전 설 (주) 대 표 김 순 기	성동구성수동 688 ~ 성동구성수동 87	1,408,672
8	"	"	(주) 라 이 프 대 표 조 내 벽	성동구성수동 87 ~ 성동구자양동 703	5,324,721
9	"	"	삼 심 중 합 전 설 (주) 대 표 안 병 희	성동구자양동 703 ~ 성동구팔장동 217	11,686,944
10	"	"	삼 환 기 업 (주) 대 표 최 종 환	성동구팔장동 217 ~ 성동구암사동 산 4	17,181,088
2. 골재채취 허가기간: '83. 5. 1 ~ 84. 2. 29					
※ 채취허가량 및 기간은 한강종남계발제회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고시제 252 호			307 호 (78.7.19) 와 동공고 제 263 호 (79.8.3) 로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 고된 제계발사업 옥석 2구역 일부 및 용산 1 구역 일부 (4,12,15,19,23 구획) 에 대하여 주민동의 및 일괄 이의 신청 신의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발 법 제 41 조와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 한다.		
주택개발 제계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13 호 (76.9.4) 와 동고시 제 323 호 (78.7.4) 로 사 업시행 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					

2. 상기 구역내 토지소유자 및 분양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인가 고시로 가름할것이며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지적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인가내용

- 사업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 시행자 : 서울특별시
- 위치 : 후석 2구역 (동작구 후석동 33, 35번지일대)
용산 1구역 (용산구 용산 2가동 1, 5번지일대)
- 면적 : 후석 2구역 (104,017㎡)
용산 1구역 (12,556㎡)
- 사업기간 : 본인가일로부터 86. 12.31 까지
- 관리처분내역 : 별도개별통보문함조

1983.5.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5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 (82.4.27)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 계획 인가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토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5. 3.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구토구신도림동
31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 신도림중학교 부지조성 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12,756㎡
2) 건축계획 건축면적 1,800㎡
연면적 6,885㎡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1) 착공예정일 : 1983.4.

2) 준공예정일 : 1985.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254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외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5. 7

서울특별시장

1. 육류 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2,200 원

2. 시행일

1983. 5. 9일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36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8 호 (79. 10.23) 와 동고시 제 393 호 (81. 10.31) 와 제 264 호 (82.7.15) 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재개발사업 아현 1 구역과 신길 2 구역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도시재개발

법 제 41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일부변경하여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2. 등 공고 내무은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 송달함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등공고로 갈음하고 변경대상 물건지에 대하여는 등계획 변경인가시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며 관례도서는 관할구청 주탁과에 비치하고 공람한다.

가. 명칭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나. 위치 : 마포구아현동아현 1 구역

(2,3,9,16,19,21,24,

26 구역내 일부택지)

영등포구신길동 247-99,

-281.-207.-264 번지일대

1983. 4.3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38 호

관인책기공고

불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장의 직인
을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다

태와 같이 폐기함을 통규정 제9조 및 통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3. 5. 2

서울특별시

1. 폐기일자: 1983. 4. 22

가. 폐기지인: 불광동보조수원지사무소장인

인	
영	
공인명	불광동보조수원지사무소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 239 호

관인폐기공고

도시가스사업소장의 직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함을 통규정 제9조 및 통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3. 5. 2

서울특별시

1. 폐기일자: 1983. 4. 22

가. 폐기지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42 호

환지처분공고

1. 당시가 1976.6.25, '76.11.20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2. 판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 감함한다.

1983. 5. 4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가. 사 업 명: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환지처분위치: 동대문구강안동, 면목

동, 성동구 군자동 능동
다. 환지처분면적 : 1,917,323㎡
라. 판매도시의 열람

1) 환지처분내용 : 지번, 지목, 지적
증감에 대한 판매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2) 청 산 금 :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
지처분 내용에 의하여 변경되었
으므로 동변경된 사항을 당시에
서 공부를 정리할것이나 강수청
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납
부 즉시 정리되며 체비지 소유
자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전 등기 절차를 취하시기 바
라며 (구비서류 : 매도증서 및 위
임장 교부신청서 (소정양식) 체비
지 계약서 및 명의변경 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매도증
서 및 위임장 각 2부)

바. 청산금의 징수교부 : 청산금의 징

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
된 청산금은 공람의 열람후에 별
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
은 납입고지 이전이라도 납부가
능함.

사. 금회처분 보유한 일부토지
(15,000㎡)는 추후 별도 공고
및 개별통지할 예정임.

◎서울특별시공고제 243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다음 업체의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를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단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하였기, 동
법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한다.

1983. 5. 4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다

음

면허번호	업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 사유	법적근거	비고
82-12- 28 (설비)	설비	가나공 영 (주)	양운식	중구올지로 3가 282-5	83. 5.4	사무실 면적부 족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5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24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82.5.14) 및 동고시 제 344 호 (82.8.23)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화곡동 320 학교법인 명덕학원 (T603-6769) 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3.5.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내발산동 169 일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및 명칭 : 영일여중고등학교
3. 규모 : 총 건물 8 동 지상 5 층 건물 4 동 지상 1 층 건물 4 동 (총면적 18,315.22㎡)
4. 사업시행허가신청자 : 학교법인명덕학원
5.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 개년간

○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당시가 사업시행하여 환지처분한 영동 2 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정수청산금 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 1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한다.

1983. 5. 6.

서울특별시장

아 래

- 가. 지구명 : 영동 2 차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다. 납부기한 : 1983.5.31.
- 라. 공시송달사유 : 주소또는 거소불명
- 마. 공시송달대상토지별청산명세 :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 바. 기타 : 공시송달대상토지 소유자
께서는 당시 구획정리과에 오셔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47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집행계획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5. 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하수도)

나. 사업시행의 면적: 297,500㎡

1) 사업명: 축척변경사업

2) 확정내역

다. 사업시행기간

(시작) 1983.6

(끝) 1986.6

라. 사업시행계획도서: 별첨(도면생략)

마. 사업시행위치: 강남구일원동 580번지 일대

○성북구공고제 226 호

축척변경사업확정공고

1. 동소문동1가지구 및 4가지구 축척변경사업에 대하여 지적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축척변경사업이 완료되었기 다음과 같이 확정을 공고한다.

1983. 5. 2.

성북구청장

지구명	토지소재	축척	필지수	면적	비고
동소문동1가지구	성북구동소문동1가 73번지의 42필지	1:600	43	2,674.9	확정결과 면적증감이 없어 청산사항 공고 생략
동소문동4가지구	성북구동소문동4가 7번지의 63필지	"	64	4,336	
계			107	7,060.9	

* 확정공고와 동시 지적공부 시행

사 령

◎ 1983년 4월 30일자

명제 15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광 부	올림픽기획단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주사
천 기 용	"	올림픽준비기획단	"
유 형 래	"	"	"
박 동 운	"	"	"
한 규 열	"	"	지방행정주사보
고 철 수	"	재정기획과	"
박 경 회	"	도시가스사업소	"
문 홍 범	"	"	"
오 종 근	"	중구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 근 호	"	지하철도과	"
김 중 현	"	세종문화회관	"
정 석 재	"	성동구민방위과	"
심 윤 보	"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황 남 용	"	용산구민방위과	"
기 경 선	"	지하철도과	"
이 강택	기획관리실	정책조정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정 동 열	"	"	지방행정주사보
유 춘 일	"	"	"
한 형 석	"	"	"
김 삼 봉	"	"	"
이 영 의	"	동작구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
김 동 환	"	강동구기획감사과	"
김 장 환	"	용산구 "	"
이 평 재	"	중 구 "	지방행정주사보
이 기 현	"	서대문구총무과	"
유 청 하	"	종합건설본부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용덕	감사관	올림픽준비기획반	지방행정주사
김용명	"	지하철도과	"
손인목	"	도시가스사업소	"
박기호	내무국 인사과	운수 1 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영원	" 총무과	비상계획과	"
허권영	" 인사과	관악구총무과	"
박화수	종합민원실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
최태홍	산업경제국	운수 2 과	"
이인제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한덕	"	"	지방행정서기
이종승	건설관리국	제개발과	지방행정주사
최선경	"	성북구기획감사과	"
이외환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영	재무국	재정기획과	지방행정주사
김찬주	"	"	"
신팔복	"	"	지방행정주사보
윤주경	"	"	"
강경신	"	"	"
전태홍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지방행정주사
윤석종	"	"	지방행정주사보
권귀원	"	"	"
권주철	교통국	지하철도과	"
이남휘	"	"	"
김선석	"	용산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원봉제	총로구	도시가스사업소	"
권외효	"	"	지방행정서기보
소형섭	"	"	"
이용규	중 구	"	지방행정주사
원유숙	"	"	지방행정주사보
이두규	"	"	지방행정서기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경 수	중 구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주 석	용 산 구	"	지방행정서기
정 용 인	"	"	"
박 동 건	"	"	"
김 영 철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김 성 남	"	"	지방행정서기
이 종 국	은 평 구	불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제 성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소	"
진 종 문	"	"	"
구 영 숙	강 서 구	"	지방행정주사
곽 승 열	"	"	지방행정서기
원 진 회	"	"	"
설 영 숙	"	"	"
박 석 종	"	"	"
김 유 춘	구 로 구	"	"
성 상 환	"	"	지방행정서기보
이 영 운	근로자회관	"	"
이 선 재	영 동 포 구	"	지방행정주사
서 기 열	"	"	지방행정서기
이 삼 태	"	"	"
김 진 복	"	"	"
맹 동 기	"	"	"
방 래 석	"	"	"
김 영 익	"	"	"
석 회 근	"	"	"
박 종 성	"	"	"
정 선 택	"	"	지방행정주사
송 용 근	관 약 구	"	지방행정서기
이 상 익	"	"	"
김 정 배	"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 유 현	관악구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강 판 성	"	"	"
송 인 창	강남구	제정기획과	" 주사보
김 기 덕	"	도시가스사업소	" 서기
김 통 영	"	"	"
김 규 성	강동구	동대문구청소과	" 주사보
이 수 용	"	중구청소과	"
차 제 화	"	도시가스사업소	" 서기
김 영 손	"	"	" 서기보
강 태 용	"	강서구화목3동	" 서기
곽 제 연	"	동대문구새마을과	"
엄 규 용	"	종로구종로1, 2가동	"
이 종 철	"	성북구길음2동	"
장 광 진	공무원교육원	올림픽준비기획반	행정주사
서 성 길	"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양 용 석	"	관제과	"
남 성 회	"	지하철건설본부	" 주사보
정 필 록	"	종로구세무1과	"
김 태 운	"	동대문구사회복지과	"
아 형 철	"	도시가스사업소	" 서기
유 진 석	"	"	"
이 덕	종합건설본부	서대문구연희1동	"
오 일 규	서울시립대학	도시가스사업소	" 주사
황 규 태	"	중구주택과	" 주사보
주 선 영	"	도시가스사업소	"
권 춘 미	"	"	" 서기
최 광 수	영등포병원	"	" 주사보
장 욱 규	"	"	" 서기
이 판 용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 주사보
오 화 서	강서구보건소	"	"
박 기 범	우면삼백수지사무소	"	" 서기

명제 158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황인무	올림픽시설담당관	강동구 (종합민원실)	지방건축기사
신박우	"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보
정선용	"	성북구	지방농림기사
김부경	"	공원녹지과	지방전기기사
전용완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성광수	감사담당관	재개발과	지방지적기사
이성욱	산업경제국	종합건설본부	지방화공기사
김수부	도시계획국	종로구	지방지적기사보
남정운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강태율	"	"	"
최도수	건설관리국	종합건설본부	지방기계기사보
박경래	"	공원녹지과	지방건축기사보
조익연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김창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농림기사
이흥수	"	동작구	지방농림기사
주명준	"	구로구	"
신기원	"	공원녹지과	지방농림기사보
정수철	"	"	지방전기기사보
이항구	"	"	지방토목기사
손도근	"	"	지방농림기사
이수원	"	"	"
김규태	"	"	"
윤병식	"	"	지방농림기사보
이사원	"	"	"
김재만	"	"	농림지원
신문섭	"	"	"
허정현	"	"	지방토목기사
김소정	교통국 (종합건설본부 파전 83.4.30-83.6.20)	지하철도과	지방토목기사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강창균	상하수국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조덕현	"	중학건설본부	지방화공기사
나석근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황인기	"	지하철도과	지방토목기사
설인규	"	수원기전과	지방전기기사
이익노	"	"	지방기계기사보
문학기	민방위국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서기석	중구	"	"
이석원	성동구	대현산매수지	지방토목기원
합점섭	동대문구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
권기대	"	"	지방화공기원
김남석	성북구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기원보
이재형	도봉구	은평구	지방농림기사
강운석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
김정호	도봉구	"	지방화공기원
배영기	은평구	"	지방토목기원보
김선일	강서구(연료파마전) (83.4.30-83.6.30)	"	지방토목기원
성기환	"	"	지방건축기원
이용심	구로구	"	지방토목기원
이점호	"	"	지방화공기사보
김환규	"	"	지방화공기원
조현태	"	"	지방화공기원보
조상수	"	"	지방화공기사
구성만	영등포구(연료파마전) (83.4.30-83.6.30)	"	지방토목기원보
형용일	영등포구	"	지방화공기사보
홍성득	"	"	지방화공기원
이용운	"	"	지방전기기원보
김남면	강남구	종합기술속산물검사소	지방속산기사보

성명	발행사항	현부서	직급
김화식	강남구	공무원교육원	지방토목기원보
최철식	강동구	도시가스사업소	"
유성진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도과	지방토목기사
김정호	"	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보
한상덕	지하철운영사업소	불광동보조수원지	지방전기기사
김동기	" (지하철건설본부파 전 83.4.30-83.6.15)	종합건설본부	지방전기기사보
백형호	지하철운영사업소	"	지방기계기사
권종연	" (지하철건설본부파 전 83.4.30-83.6.15)	"	지방전기기사보
김길남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고광섭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지방전기기원보
이승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	대현산배수지	지방토목기원보
박권호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전기기원
강경희	민방공경보통계소	총무과	지방통신원
최복현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공무원교육원	지방화공기원보
노병문	자동차관리사업소	도시가스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윤증택	서부위생처리장	"	지방기계기원
유수현	죽도수원지사무소	종합건설본부	지방화공기원
김동환	"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영근	"	"	지방기계기원
김덕유	영동포수원지사무소	"	"
박종춘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지방전기기원
강재천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지방기계기원보
송은영	대현산배수지사무소	종합건설본부	지방기계기사보

◎ 1983 년 5 월 3 일자 명제 159 호 운 수 2 과 백 성 현 기 제 기 사 보 경찰국 배연합동단속반 파전군무를 명함. (83.5.3-83.10.31)	◎ 1983 년 5 월 4 일자 명제 160 호 내 무 국 윤 갑 선 지 방 서 기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	---